

[별표 8] <개정 2015.11.9.>

<b>승 강 기 운 행 정 지</b>		
이 승강기는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정지합니다.		
운영정지 기간:		
운영정지 사유:		
년	월	일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		직인

<비고>

1. 바탕: 노란색
2. 글자: 검은색
3. 사선: 붉은색
4. 크기: 320mm×220mm
5. 종이질: 인쇄용지(특급) 70g/m<sup>2</sup>